

《2022. 10월 2차》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사적 이해관계 신고



도 입 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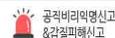
- (내 용)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와 이해충돌 상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사안 발생 시 신고 및 소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관련 규정 : 「공무원행동강령」 제5,9,10조 및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5조
- (신고의무)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현실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제도 도입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신청 가능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시 ①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②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③ 직무재배정, ④ 전보 조치를 통한 관련 직무에서 배제 등을 조치
- (이해관계)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사적이해관계의 범위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 예시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심의
-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줌

부조리 신고

-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케이위슬 연결)
-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